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356
----------	-------

발의연월일 : 2019. 9. 5.

발의자 : 김성찬 · 성일종 · 이은권

심재철 · 경대수 · 김태홍

김승희 · 정운천 · 이종명

이명수 의원(10인)

제안이유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및 계약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보장을 통해 신항만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업권 및 환경훼손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직·간접적 피해를 보상하고 신항만과 주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의3, 제21조의4).

나.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정하고 있는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5).

다.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6).

라. 안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안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7).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3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1조의5(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례) 국가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의6(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21조의7(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나 참여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제21조의3(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원계획의 수립)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원계획과 관련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②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p> <p>③ 지원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p> <p>④ 지원계획의 수립절차·요건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신 설></u>	제21조의4(지원사업의 시행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 3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시행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원사업의 시행자가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6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1조의5(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특례) 국가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21조의6(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사업시행자가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제21조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

<신 설>

다.

제21조의7(신항만건설 예정지역

주민의 우선고용 및 참여) 사
업시행자가 제21조의4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제21조
의5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지원
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사
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
역 주민을 우선하여 고용하거
나 참여시킬 수 있다.